

2024년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지원공고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특화분야(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업 및 강소특구 소재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하여 「2024년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특화개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업 및 강소특구 소재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산업 육성 활성화
- ☐ (사업방향) 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2. 공고대상 사업

사업명	사업지원 대상	예산(천원)	지원 내용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소재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	65,000	마케팅, 컨설팅, 연구장비 지원 등 기업의 역량강화, 애로사항 해결 지원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②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에 본·지점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50,000	시제품 제작, 설계·해석, 시험·인증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충남 천안·아산 소재 기업	15,000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지원 등

* 차세대 자동차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 강소특구 소재기업: 2페이지 '강소특구 소재 기업 확인방법' 참고

위 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의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안내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2024년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지원공고문 1식]

참고

강소특구 소재 기업 확인방법

1.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통합포털 접속 (<http://www.eum.go.kr/web/am/amMain.jsp>)하여 기업 주소 입력

* '주소 검색'① 또는 '주소 지도로 찾기'②를 통해 입력 가능

* 주소 검색 : 도로명 주소보다 ○○동 ○○번지로 검색하는 것이 정확함

2. 주소 검색란에 주소 입력 진행 후 열람 진행

-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이 명시되어 있으면 특구 소재 기업으로 인정됨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2013-06-05)(만도기계),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5-15)(매곡지구), 대로2류(폭 30m~35m)(대(주)2-1)(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20-08-2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 동 사업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천안·아산 이외 지역 강소특구 소재 기업은 수혜 대상이 아님

2024년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지원공고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구성

-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

□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공고기관	홈페이지 주소
한국자동차연구원(사업운영기관)	http://www.katech.re.kr https://innopolis-katech.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s://www.innopolis.or.kr
천안시	https://www.cheonan.go.kr
아산시	https://www.asan.go.kr

□ 공고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각 사업별 접수기간 참고

사업명(개별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24.06.10(월) ~ '24.07.09(화)	'24.06.10(월) ~ '24.07.09(화) 18:00까지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4.06.10(월) ~ '24.07.09(화)	'24.06.10(월) ~ '24.07.09(화) 18:00까지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	'24.06.10(월) ~ '24.07.09(화)	'24.06.10(월) ~ '24.07.09(화) 18:00까지

※ 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E-mail로 온라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이메일
안영민 연구원	041-424-7019	ymahn@katech.re.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세부사업별 공고문’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본 공고사업의 평가·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역량강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수요중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교수, 외부의 전문수행기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65백만원☐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선정 시 ~ '24. 12. 31 까지☐ 지원방식 : 간접지원(바우처 방식)

※ 바우처 : 수혜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문수행기관(전문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전문수행기관(전문가)에게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

※ 사업비는 사업운영기관에서 전문수행기관(전문가)에게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소재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 또는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에 본·지점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세부사항	사업결과물	매칭방법	지원규모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홍보영상 (파일 등)	전문수행기관 자율 매칭	5백만원 이내
	홈페이지 제작	•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홈페이지		5백만원 이내
	브로슈어 제작	• 기업, 제품홍보를 위한 홍보 인쇄물 등 제작 지원	브로슈어 (파일 등)		3백만원 이내
컨설팅	기술전반	• 애로기술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컨설팅 일지 및 보고서	전문수행기관 (전문가) 자율 매칭	3백만원 이내 (1일 최대 40만원 3시간 기준)
	경영전반	• 인사, 노무, 특허, 세무, ESG, IPO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애로사항 자문 및 컨설팅			
	사업화 전략	• BM 보완 투자연계 IR 자료 제작, 상용화 기술 등 자문 및 컨설팅			
연구장비 지원	공공연구기관 연구장비 이용	• 충남 천안아산 소재 공공연구기관 연구장비 이용 시 장비 이용료 지원	연구장비 활용 보고서	공공연구기관 자율 매칭	3백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은 지원내용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자율 매칭하여 신청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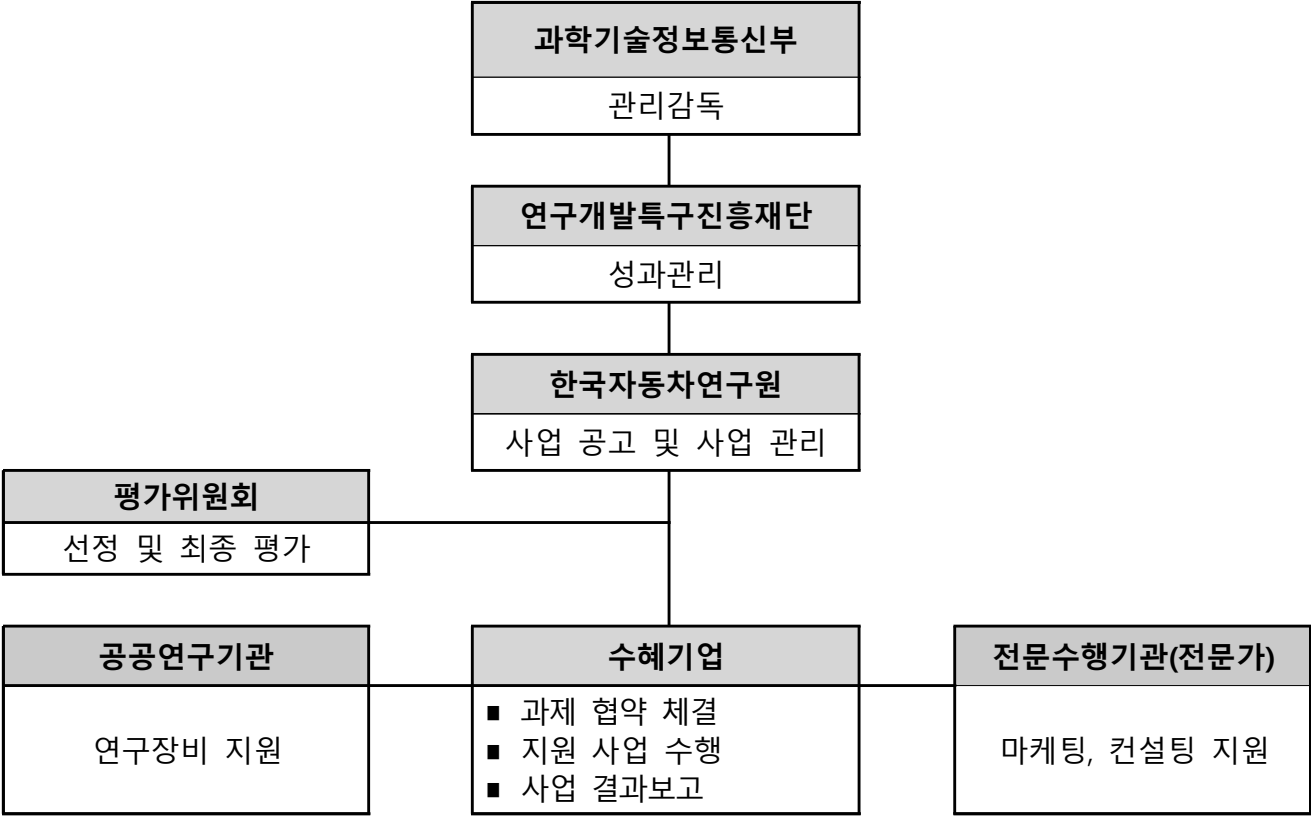
※ 공급가액은 사업운영기관이 부담하며, 부가세 발생 시 수혜기업이 부담함
(단, 전문수행기관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인 경우, 내부과제로 진행됨에 따라 부가세 미발생)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보안 과제 : 해당 없음(일반)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4. 06. 10. ~ '24. 07. 09.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4. 06. 10. ~ '24. 07. 09.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24. 7월 중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 후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지원기간 (~ '24. 12. 31.)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최종평가)	지원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25. 01. 15.)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
↓		
회계정산	최종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 '25. 02. 15.)	○ 전문수행기관에 사업비 지급 (사업결과 평가 후 결격사항이 없을 시)

※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추진계획 타당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사업수행 적정성	• 사업지원 내용과 활용 방안의 적정성	40
	• 사업비의 적정성	
	• 전문수행기관(전문가)의 전문성 및 역량	
사업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30
	•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	
합계		100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항목

구분	내용	가·감점
가점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3점
	'24. 03. 10 이후 공공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사업 선정 후 사업비 지급 전까지 공공기술을 이전 받을 예정인 기업**	3점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3점
감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기 수혜기업	-3점

* 차세대 자동차 부품 :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형 자동차 용·복합 부품 (공고문 9페이지 참조)

**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을 이전받은 수혜기업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해야 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공고기관	홈페이지 주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업운영기관)	http://www.katech.re.kr https://innopolis-katech.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s://www.innopolis.or.kr
천안시	https://www.cheonan.go.kr
아산시	https://www.asan.go.kr

- 접수기간 : '24. 06. 10(월) ~ '24. 07. 09(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HWP 등) 형태로 E-mail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이메일
안영민 연구원	041-424-7019	ymahn@katech.re.kr

6. 유의사항

□ 공통사항

- 과제 수행 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사업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 지원 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사업운영기관의 요청 시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는 경우,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검토사항	내용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별사업 자체 운영관리지침

[참고]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분류코드

특화분야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세대 자동차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표시/출력 디스플레이(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Cockpit 등), 제스처/음성/햅틱 등 조작/입력 부품, 탑승자 상태/감성/행동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연동 제품, AI기반 커넥티드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공학 기기 제외(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배터리 (전체 배터리 시스템)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차세대 배터리 셀, 차세대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체계적인 시험/평가를 통한 배터리 데이터베이스, xEV 전력 아키텍처 설계/검증 및 전기에너지 제어 기술, 충전 및 전력변환시스템 설계 검증 기술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자동차 융복합 부품 (편의·안전· 공조· 고기능성 소재)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공학 기기 제외(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 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설계·해석, 시험·인증 등 기업 수요중심의 사업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50백만원☐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선정 시 ~ '24. 12. 31 까지☐ 지원방식 : 간접지원(바우처 방식)

※ 바우처 : 수혜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문수행기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전문수행기관에게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

※ 사업비는 사업운영기관에서 전문수행기관에게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천안시 또는 아산시에 소재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 또는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에 본·지점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 지원내용

지원내용	세부사항	사업결과물	매칭방법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 사업화/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완제품 양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은 제외)	시제품, 보고서 등	전문수행기관 자율 매칭	10백만원 이내
설계·해석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구조·규격 설계,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설계, 생산 제품 설계	설계도/도면 보고서 등		
시험·인증	• 시험 분석, 성능 평가, 안정성 평가 • 국내·외 진출을 위한 개념검증 • 국내·외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에 획득한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제외)	분석보고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허가서 등 해당 결과물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은 지원내용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자율 매칭하여 신청하되 전문수행기관은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함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제외대상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공급가액은 사업운영기관이 부담하며, 부가세 발생 시 수혜기업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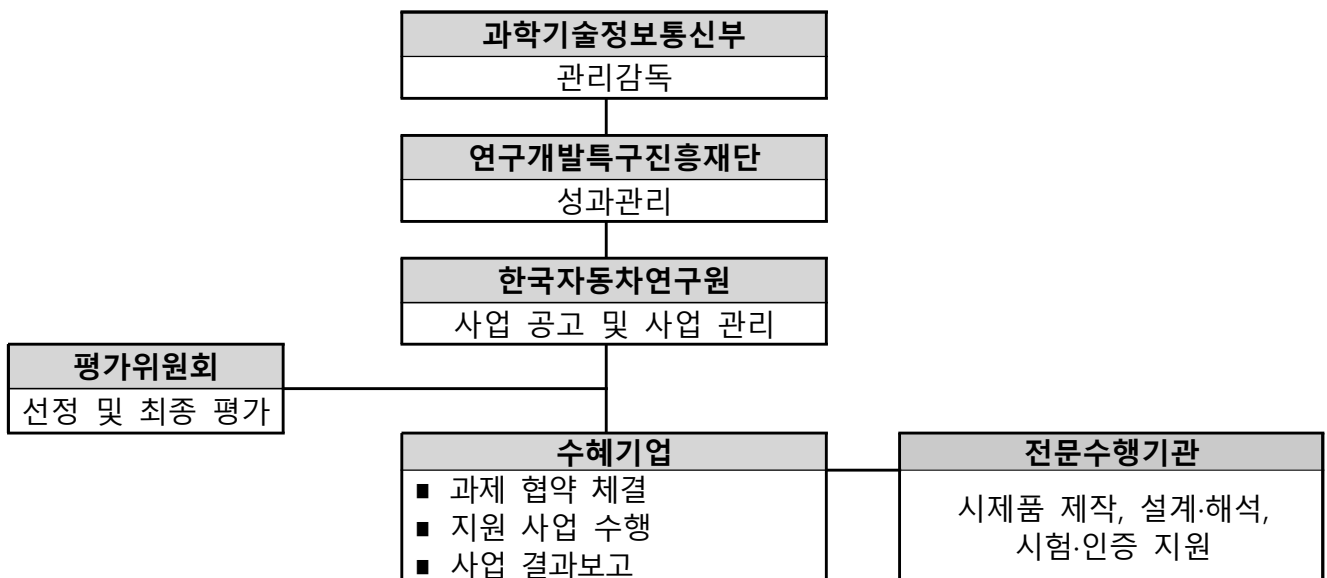
(단, 전문수행기관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인 경우, 내부과제로 진행됨에 따라 부가세 미발생)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보안 과제 : 해당 없음(일반)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4. 06. 10. ~ '24. 07. 09.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4. 06. 10. ~ '24. 07. 09.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24. 7월 중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 후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지원기간 (~ '24. 12. 31.)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최종평가)	지원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25. 01. 15.)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
↓		
회계정산	최종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 '25. 02. 15.)	○ 전문수행기관에 사업비 지급 (사업결과 평가 후 결격사항이 없을 시)

※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항목(안)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신청기업 (80)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30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3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전문수행기관 (20)	관련분야 전문성 및 역량	• 지원분야의 수행기관 매칭 적합성 및 관련 실적	20
		•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역량	
계			100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항목

구분	내용	가·감점
가점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3점
	'24. 03. 10 이후 공공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사업 선정 후 사업비 지급 전까지 공공기술을 이전 받을 예정인 기업**	3점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 보유 기업	3점
감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기 수혜기업	-3점

* 차세대 자동차 부품 :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공고문 17페이지 참조)

**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을 이전받은 수혜기업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해야 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공고기관	홈페이지 주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업운영기관)	http://www.katech.re.kr https://innopolis-katech.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s://www.innopolis.or.kr
천안시	https://www.cheonan.go.kr
아산시	https://www.asan.go.kr

- 접수기간 : '24. 06. 10(월) ~ '24. 07. 09(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HWP 등) 형태로 E-mail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이메일
안영민 연구원	041-424-7019	ymahn@katech.re.kr

6. 유의사항

□ 공통사항

- 과제 수행 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사업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 지원 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사업운영기관의 요청 시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는 경우,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검토사항	내용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별사업 자체 운영관리지침

[참고]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분류코드

특화분야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세대 자동차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표시/출력 디스플레이(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Cockpit 등), 제스처/음성/햅틱 등 조작/입력 부품, 탑승자 상태/감성/행동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연동 제품, 시가반 커넥티드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 (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 (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배터리 (전체 배터리 시스템)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차세대 배터리 셀, 차세대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체계적인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 (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자동차 융복합 부품 (편의·안전· 공조· 고기능성 소재)	시험/평가를 통한 배터리 데이터베이스, xEV 전력 아키텍처 설계/검증 및 전기에너지 제어 기술, 충전 및 전력변환시스템 설계 검증 기술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 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5백만원☐ 지원규모 : 1개사☐ 지원기간 : 선정 시 ~ '24. 12. 31 까지☐ 지원방식 : 간접지원(바우처 방식)

※ 바우처 : 수혜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문수행기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전문수행기관에게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

※ 사업비는 사업운영기관에서 전문수행기관에게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24. 03. 10. 이후 공공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이전받을 예정인 충남 천안·아산 소재 기업

※ 기술이전은 사업비 지급 전까지 진행 필수

☐ 지원내용

지원내용	세부사항	사업결과물	매칭방법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 개념검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완제품 양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은 제외)	시제품, 보고서 등	전문수행기관 자율 매칭	15백만원 이내
시험·인증	• 시험 분석, 성능 평가, 안정성 평가 • 국내·외 진출을 위한 개념검증 • 국내·외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기존 획득한 인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제외)	분석보고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허가서 등 해당 결과물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은 지원내용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자율 매칭하여 신청하되 전문수행기관은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제외대상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공급가액은 사업운영기관이 부담하며, 부가세는 수혜기업이 부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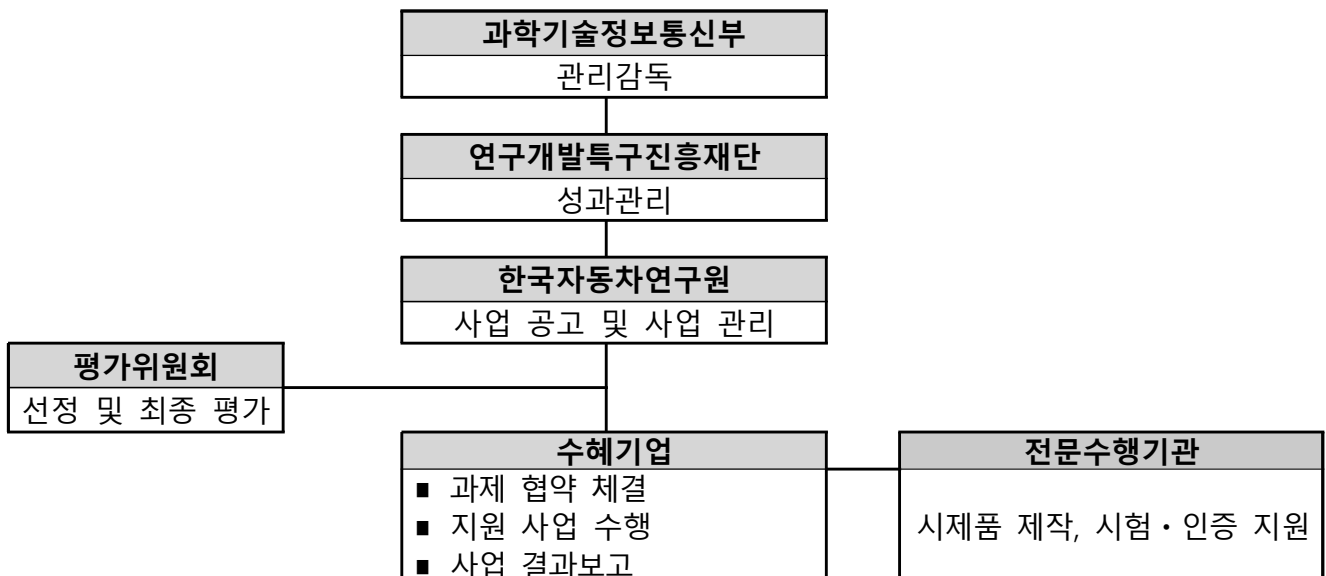
(단, 수행기관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인 경우, 내부과제로 진행됨에 따라 부가세 미발생)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보안 과제 : 해당 없음(일반)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4. 06. 10.~'24. 07. 09.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4. 06. 10.~'24. 07. 09.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24. 7월 중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 후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지원기간 (~ '24. 12. 31.)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최종평가)	지원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25. 01. 15.)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
↓		
회계정산	최종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 '25. 02. 15.)	○ 전문수행기관에 사업비 지급 (사업결과 평가 후 결격사항이 없을 시)

※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목적성	• 사업(실증)의 필요성	30
	• 사업내용의 구성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40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전문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전문수행기관 매칭 적합성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사업성	•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30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 사업 후속 연계 성과 창출 전략	
계		100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항목

구분	내용	가·감점
가점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3점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 보유 기업	3점
감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기 수혜기업	-3점

* 차세대 자동차 부품 :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형 자동차 용·복합 부품
(공고문 25페이지 참조)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공고기관	홈페이지 주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업운영기관)	http://www.katech.re.kr https://innopolis-katech.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s://www.innopolis.or.kr
천안시	https://www.cheonan.go.kr
아산시	https://www.asan.go.kr

- 접수기간 : ‘24. 06. 10(월) ~ ‘24. 07. 09(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HWP 등) 형태로 E-mail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이메일
안영민 연구원	041-424-7019	ymahn@katech.re.kr

6. 유의사항

□ 공통사항

- 공공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으로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비 지급 전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과제 수행 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사업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 지원 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사업운영기관의 요청 시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는 경우,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검토사항	내용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검토사항	내용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발사업 자체 운영관리지침

[참고]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분류코드

특화분야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차세대 자동차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표시/출력 디스플레이(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Cockpit 등), 제스처/음성/햅틱 등 조작/입력 부품, 탑승자 상태/감성/행동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연동 제품, AI기반 커넥티드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공학 기기 제외(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배터리 (전체 배터리 시스템)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차세대 배터리 셀, 차세대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체계적인 시험/평가를 통한 배터리 데이터베이스, xEV 전력 아키텍처 설계/검증 및 전기에너지 제어 기술, 충전 및 전력변환시스템 설계 검증 기술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자동차 융복합 부품 (편의·안전· 공조· 고기능성 소재)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고무제품 제조업(C221)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C23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공학 기기 제외(C272)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알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구 및 조명 장치 제조업(C284)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반도체 제조업(C261)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C265)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